

의안번호	제 226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7월 1일

#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
----------	-----

발의연월일 : 2019년 7월 1일

발의자 : 육미선,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최경천,  
박문희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의를 포함(안 제2조).
- 나. 여성 권익과 지위향상 부진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을 확대함(안 제12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나. 협의 : 여성가족정책관
- 다. 비용추계 : 해당없음

##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상으로”를 “대상(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 대상에 대한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12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5항 단서 중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도민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 모니터링,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

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 본문 중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결과  
를” 을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u></p>
<p>&lt;신설&gt;</p>	<p><u>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u>대상으로</u> 한다. 다만, 제2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5.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p>	<p>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 ----- ----- ----- <u>대상(이하 “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 ----- -</p>

<p><u>제6조 (생 략)</u></p>	<p><u>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u></p>
<p><u>제7조 (생 략)</u></p>	<p><u>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u></p>
<p><u>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 대상에 대한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u></li> <li><u>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u></li> <li><u>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u></li> </ol>
<p><u>제9조 (생 략)</u></p>	<p><u>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u></p>
<p><u>&lt;신 설&gt;</u></p>	<p><u>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u></p>

	<p><u>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③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④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⑤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p>
<p><u>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u>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성별영향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u>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u> ----- ----- ----- <u>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u>----- -----.</p> <p>②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6. (생 략)</p>	<p>6. <u>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u>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 ⑦ (생 략)</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충청북도의회</u> ----- ----- ----- -----.</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 ~ 제16조 (생 략)</p>	<p>제14조 ~ 제18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p>
<p>제17조 · 제18조 (생 략)</p>	<p>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p>
<p>&lt;신 설&gt;</p>	<p>제19조(도민의 참여조성) <u>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 모니터링,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7조(포상) <u>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제20조(포상) <u>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결_____과 _____를</u> ----- ----- ----- -----.</p>

## 관계법령 발췌

###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